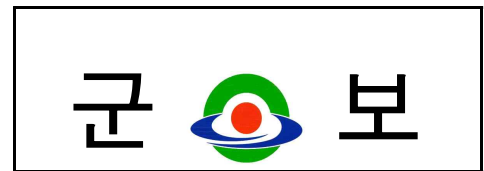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368호 2022. 5. 16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-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(예천군 공고 제2022-752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16일

예 천 군 수

1. 개정이유

매매(분양)계약일로부터 주거안정기금 신청시기를 확대하여 주택자금 신청서류 제출 시 혼동을 줄이고, 채권 상환관리 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금채권 상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대부 신청시기의 확대 (안 제4조제2항제1호)

- 주거마련을 위한 대부 신청시기를 확대하여 서류제출 시 시기 미도래 및 기한 혼동으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함
- 최근 부동산 매매(분양)시세가 높고 계약일에서 잔금 납부기한까지 1년 이상인

부동산 거래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, 계약일로부터 잔금 납부기한의 2개월 전일까지는 수시로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

나. 수기 관리하는 상환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

(안 제13조)

- 수기로 관리하던 상환관리 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금 채권 상환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

4. 개정규칙안 : 붙임과 같음

5. 의견제출

이 개정규칙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 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행정지원실장)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: 찬·반 여부와 그 사유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연락처,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, 전화, 전자우편, 방문 등

라. 보내실 곳

- 주소 : 우)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행정지원실
- 전화 : 054-650-6842, 팩스 : 054-650-6309
- 전자우편 : rrtt6970@korea.kr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

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주택매입자금 : 매매(분양)계약일로부터 잔금 납부완료일의 2개월 전일까지

제13조 중 “비치하여야 하며”를 “비치하되 필요 시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. 1. 주택매입자금 : 매매(분양)계약일, 분양중도금 납부일전, 분양주택 입주지정일전으로부터 3개월 이내 2. 3. (생략) ③ (생략)	제4조(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주택매입자금 : 매매(분양)계약일로부터 잔금 납부완료일의 2개월 전일까지 2. 3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상환관리대장 비치)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상환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, 제12조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취급실적 통보사항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	제13조(상환관리대장 비치) ----- ----- ----- <u>비치하되 필요 시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,</u> --- ----- -----.